

8. 토지수용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201호 1998. 5. 20

주 요 골 자

- 가. 제철, 비료등 개별제조업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를 수용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
- 나. 공공사업의 준비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하가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조정함.
-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관할로 조정함.
- 라. 토지소유자의 잔여지매수 청구시한이 한정되어 있어 피수용자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매수청구를 그 잔여지에 접속된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청구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함.
- 마.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여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소송이 보상금증액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재결청을 당사자에서 제외토록 현행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개선함.
- 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서만 행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업무를 기업자가 국가·지자체·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을 하거나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 시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개선함.
- 사.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부과절차를 정함.

개정이유

공공사업의 준비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허가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업무를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관할을 변경하며,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토록 하며, 지자체에 의뢰하여야만 행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업무를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사업 시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기업자가 국가·지자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직접 행정대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회보